

# Labor & Safety Q·A

분야 안전관리자선임 등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시의 공사금액 개념

Q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설>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공사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위험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임.

<을 설>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법 적용을 일관성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 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기술지도

제목 망사형 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Q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더위에 과다한 신체노출 방지를 위하여 무재해라 적혀있는 망사형 조끼를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 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야 업무상재해

제목 부식으로 사용하는 채소밭에 퇴비운반 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Q

당소 관내 OO화학에서 공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처가 갑에게 동사 사내에 일귀 놓은 채소밭에 거름으로 상용할 퇴비(건초)를 지게차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갑이 사업주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 동사 밖으로 나가 건초가 있는 논두렁 쪽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지게차가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재자 갑은 자의적이 아니고 사업주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퇴비를 운반하고자 지게차를 운전중 부주의로 사망한 재해이며 동 장소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는 소속 근로자들의 부식으로 사용되어 왔고, 채소 재배작업에 종종 동원된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분야 안전장치 및 방호장치의 기준 등

제목 LPG 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LPG 충전시설을 보유·사용하고 있는 당 사업장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상의 가스충전을 위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해 기술검토 및 허가를 받았음은 물론 법정검사(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를 제거 또는 안전밸브를 이 중으로 설치한 후 자물쇠형으로 유지하라”는 등의 시정지시를 받았는 바 - 동 시설에 대해 금후 어느 법에 따라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8조 제3항 및 안전밸브등의설치에관한기술 상의지침(노동부고시 제93-14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며(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고 임의로 조작될 경우 안전밸브가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 차단밸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야 사업장의 적용구분

제목 단일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적용기준

Q

당사의 작업형태는 주업종분야인 재단, 봉제 분야와 생산 지원부서인 인원이 전체 인원의 90% 정도 차지하고 일부 공정이 편직 및 표백, 염색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서 주업종분야인 재단, 봉제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복제조업에 해당되고 일부 공정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제2호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경우 어떤 분류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동 구분표상 제2호(의복제조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적용규정에 예시된 법조항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